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81
------------	------

발의연월일 : 2016. 12. 9.

발의자 : 박선숙 · 박정 · 장정숙
노웅래 · 김현권 · 채이배
김관영 · 신용현 · 인재근
고용진 · 김현미 · 김영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음.

그런데 현행 대리점법은 법 시행 이후의 모든 대리점 거래에 대하여 일괄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이후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이 갱신되거나 신규 체결된 대리점 거래부터 적용됨.

이에 모든 대리점 거래에 대해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조항만은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이후부터 적용하도록하여 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3614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614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13614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p> <p><u>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u></p>	<p>법률 제13614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p> <p><u>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u></p>